

# 2020년도 제3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1. 30.(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택수,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312호)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60건(안건번호 제2020-159261호 ~제2020-159963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06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324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0-31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에 대한 의견과 제2호 안건인 정보 제공 청구 심의에 대한 회의록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회의록 전문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상이 없음.
- B 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C 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공개 처리안에 동의함.
- D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3쪽~22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주)쇼박스', '(주)한글과컴퓨터', 'Adobe Systems Inc.', 'BANDAI NAMCO Entertainment', '미국 CWTV', '미국 LIFETIME', '일본 NTV', '일본 후지TV', '(주)리틀빅픽처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06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0-159261호~제2020-159963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59261호~159263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 ‘★★★★★  
★★  
★★★★★★★★’, ‘○○○○○○○○○○○○○○○○○○○○○○○○○○○○○○○○○○○○  
○○○○’를 각각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159264호~15927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일  
본 영상저작물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한 화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  
▲▲▲ 블로그, ▽▽▽▽▽에 올린 사안임.

웹하드 판매가와 정품 판매가 등 특이사항을 검토보고서 10쪽~12쪽  
의 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59261호~15927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A 위원: 만화저작물 및 일본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무단 제공  
하고 있는 사안임.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  
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D 위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고, 일본 저작물을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결함.
- B 위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9261호~15927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59274호~159963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만화 '원편맨'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59377호는 ▼▼▼▼ 이용자 '◁◁'이 '◀◀◀◀◀◀◀◀◀◀◀◀◀◀◀◀'라는 제목으로 만화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한 사안임. 원작자 겸 스토리 작가는 'ONE'으로, 원작은 2009. 07. 03.부터 현재까지 웹에서 연재 중임. 리메이크 작가는 '무라타 유스케'로,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 단행본은 2020. 10. 28. 22권까지 발행되었음.  
(영화 '#살아있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159801호는 밴드 '▷▷▷▷▷▷▷▷▷▷▷▷'에서 영화 '#살아있다'를 mp4파일로 제공중인 사안임. 해당 밴드 회원수는 총 23명임. '#살아있다'는 2020. 6. 24.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임. 채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밴드에서는 영화 '#살아있다' 이외에도 2020. 10. 15. 개봉한 영화 '돌멩이', 2020. 9. 23. 개봉한 영화 '검객'도 제공중임.

(영화 '위 섬은 더 다크니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59882호는 2020. 9. 17. 개봉한 미국 영화 '위 섬은 더 다크니스'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320P 판매 중인 사안임. 채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어 자막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59274호~15996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59274호~15996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9261호~15996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3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07.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김택수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